

수원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8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87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단52670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종중

피고, 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16. 3. 18.

판결 선고 2016. 4.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단52670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성시 J답 1,183㎡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4. 9.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8,330,16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아래에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5면 제12행의 "남자"를 "남녀"로 고치고, 제6면 18행의 "주축이" 다음에 "되어"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종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2014. 3. 30.자 임시총회와 이 사건 소제기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2015. 3. 15.자 임시총회는 그 소집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집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3호증, 갑 제8,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U은 원고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 세손도 및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된 후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이 가능한 종원들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2014. 3.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U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점, ② 위 2014. 3. 30.자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U이 원고의 연고항존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매해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원들이 모여 시제를 지내며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왔고, U은 이전부터 종중의 일을 주관하여 왔는바,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U이 연고항존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얻어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U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소제기를 추진하는 결의를 하고자 2015. 3. 15.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된 후 2015. 3. 4. 및 같은 달 6.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이 가능한 종원 36명에게 우편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던 점, ④ 피고들은 원고가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종중의 공동 선조가 비교적 가까운 선대로서 종원들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는지는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바(피고 자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4. 2015. 3. 15.자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피고들에게 각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⑤ 2015. 3. 1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종원 36인이 참석하고, V 1인이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이 사건 소제기를 추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소제기도 종중의 추진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용호

판사김춘화

판사손성희